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54호
- 발 의 자 : 김춘례, 신원철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19년 1월 30일
- 회부일자 : 2019년 1월 31일

2. 제안이유

- 월드컵, 올림픽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
-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동종목의 경우 훈련 및 연습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높은 사용료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바, 학교운동부 선수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엘리트 체육 선수 기반 강화를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50% 감액하여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인식 제고 및 차상위계층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0시간 이상의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호·제2호)
-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 시 ‘전용사용료’를 감면하여 체육복지 향유권을 확대하고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1) 차상위 계층 및 자원봉사자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에 대해 시립체육시설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1.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 나. (생략) 다. <u>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라. (생략) <u><신 설></u>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u>100분의 30 감액</u>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별표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는 100분의 30 감액
마. (생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신 설>	바. (현행 마목과 같음)

- 200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30 감액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적법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수행한 시민에게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감경해주는 것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등 14개 지자체 및 우리시 3개 자치구(성북, 노원, 강서)에서도 50~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20~30%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¹⁾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으로 최근

1) 2018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은 836,053원, 기초생활수급자 495,879원이며 4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2,259,601원, 기초생활수급자 1,340,214원임.

3년 평균 약 16만 명임.

차상위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대구광역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의 체육복지 향유권 보장을 위해 감면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학생 운동부 경기 및 훈련시 전용사용료 감면

-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50 감액하여 학생운동부 선수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엘리트 체육선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4. <u>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u> <u>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u> <u>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u> <u>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u> <u>라. 65세 이상의 노인, 12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u> <u>마.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u> <u><신 설></u></p>	<p>4. <u>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관내 초·중·고 학생 운동부²⁾ 선수는 시립체육시설 중 목동실내빙상장, 구의야구공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목동실내빙상장의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110,000원으로 부담이 큰 바, 감면 필요성이 인정됨.

〈학교 운동부 체육시설 이용현황〉

구 분(시설명)	연 도	사용인(단체)	사용목적
구의야구공원	2018	청구초등학교	한일친선교류전, 훈련
목동실내빙상장	2018	87개 학교	훈련
구의야구공원	2017	청구초등학교	한일친선교류전
목동실내빙상장	2017	87개 학교	훈련
구의야구공원	2016	청구초등학교	한일친선교류전
목동실내빙상장	2016	87개 학교	훈련

※ 목동실내빙상장은 아이스하키 17개교, 피겨 30개교, 쇼트트랙 40개교가 학교 간 협의에 의해 대관 순서 및 시간을 정하여 이용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사용료 감액 조항을 반영하여 학생운동부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향후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연간 약 1천6백만원, 학교운동부 사용료 감면으로 연간 2억 1천9백만원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체육복지 향유권 보장과 엘리트체육 지원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2) '18년 기준 440개교 624개 팀 (초 154, 중 262, 고 208)

〈학교운동부 선수 사용료 감면 현황〉

연번	단체명	조례명	관련 조항
1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2. 100분의 50 감면 차.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2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 할 수 있으며.. 3.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 선수의 평일 연습경기
3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1. 전액감면 다.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4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의 감면)③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라목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는 경기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의 훈련
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감면)① 2. 100분의 80 감면 다. 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에 소속된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평일 1일 2시간 이내)
6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증)① 1. 전액감면 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학교운동부의 훈련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면제 등)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단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시 단위 이상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외에는 1주당 2회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이 평일에 사용할 경우